

대구지방법원 2021. 9. 2 선고 2020나32320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1. 9. 2 선고 2020나323207 판결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. 10. 21 선고 2019가단34806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C

피고, 항소인 D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안교

변론종결 2021. 7. 15.

판결선고 2021. 9. 2.

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. 10. 21. 선고 2019가단34806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김천시 E 임야 78886㎡ 중 1/2 지분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2018. 2. 5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B에게 김천시 E 임야 78886㎡ 중 1/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. 3. 22. 접수 제73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,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9, 10행의 ‘피고가 L에게 이 사건 B 지분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경위와 과정 등’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『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대여사실도 충분히 인정되지 아니하는데다 설령, 대여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B 지분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경위와 과정 등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낙형, 판사 정석원, 판사 진세리